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91 발의연월일 : 2020. 12. 8.

발 의 자 : 권명호 · 박대수 · 윤영석

송언석 · 김희국 · 박덕흠

최춘식 · 김형동 · 이종성

정희용 · 김성원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해주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0년 과 2021년으로 종료될 예정임.

산재의료병원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설치 ·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산재의료병원 취득세등의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산재의료병원 등의 조세부담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2020년"을 "202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
한 감면) ① (생 략)	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②
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	
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	
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u>2020년</u> 12월 31일까지는 취	1. <u>2023년</u>
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	
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	
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삭 제>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u>취득세의 100분의 50을</u> <u>경감한다.</u>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재산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